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98
----------	-----

제출년월일 : 2016.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증진지원 조례 제정 목적(안제1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장애인의 정의(안제2조)

- 장애인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함.

다. 지원범위(안제4조)

-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
- 군 장애인복지 시책추진 사업

라. 장애인복지 경비지원 사업 근거(안제 5조)

- 건강 및 돌봄

- 휴식 및 이동편의
- 재활 및 자립
- 역량강화 및 취업
- 인식개선
- 장애인단체 운영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안제6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 · 단체 또는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개인
-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바. 보조조건(안제8조)

-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58조, 제63조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23 ~ 10.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평가 : 검토의견 반영
 - 제5조(지원사업) ①항 6,7번 추가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평창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사업
2. 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및 돌봄

2. 휴식 및 이동편의
3. 재활 및 자립
4. 역량강화 및 취업
5. 인식개선
6.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7. 학대 및 성폭력 예방
8. 장애인단체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복지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장애인
2. 법 제58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3. 법 제63조에 따른 군 소재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4.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단체 또는 군에 주소를 가진
법인·개인
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제4호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조조건) 군수는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이를 지급받은 기관·단체 등 및 시설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 및 시설은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응해야 한다.

제10조(준용) 복지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그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복지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 나. 관련조문 : 조례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세출 증가 요인 발생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수가 전년대비 4% 상승하는 것을 기준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067('15.2.3)
-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년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평균 인상을 4% 적용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소요예산 : 3,553,258천원
- 연도별 소요예산 현황

년도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553,258	668,007	688,495	709,799	731,957	755,000
장애인건강돌봄지원	280,000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장애인휴식이동지원	953,269	176,000	183,040	190,361	197,975	205,893
장애인자립재활지원	1,164,419	216,907	224,583	232,564	240,866	249,499
장애인역량강화지원	966,570	181,300	187,072	193,074	199,316	205,808
장애인인식개선지원	189,000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보조 : 94,508천원
- 군비 : 3,373,750천원
- 장애인복지기금 : 85,000천원

3. 관련 의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변경에 따라 비용추계 변경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연락처	(033) 330 -21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668,007	688,495	709,799	731,957	755,000	3,553,258	
장애인건강돌봄지원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280,000	
장애인휴식이동지원	176,000	183,040	190,361	197,975	205,893	953,269	
장애인자립재활지원	216,907	224,583	232,564	240,866	249,499	1,164,419	
장애인역량강화지원	181,300	187,072	193,074	199,316	205,808	966,570	
장애인인식개선지원	37,800	37,800	37,800	37,800	37,800	189,000	
재원 조달	668,007	688,495	709,799	731,957	755,000	3,553,258	
의존 재원	소 계	19,652	17,629	18,333	19,066	19,828	94,508
	보조금	19,652	17,629	18,333	19,066	19,828	94,508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31,355	653,866	674,466	695,891	718,172	3,373,750
	지방세	631,355	653,866	674,466	695,891	718,172	3,373,7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련 법 령 발 취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관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